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Contents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전화 💬 문자 TALK 카카오톡으로 신고가능

- 01 인권,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단면
- 02 사회가 바라본 장애,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장애
- 03 여전히 지속되는 장애인학대 실태
- 04 우리 모두, 인권을 지키는 신고의무자
- 05 장애인학대 신고, 그 의미와 힘

01

# 인권,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단면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인권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 인권

- 헌법과 국제조약에 명시
- **평등**하게 적용



UN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의 존엄, 자율, 사회 참여 권리 규정
- 우리나라: 권리 보장 의무

하지만  
아직도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존재

**아동 학대 86%가 부모...**  
**'또 다른 정인이' 지금도 울고 있다**

**요양원서 맞고 숨져도...**  
**노인 학대 처벌은 1% 왜?**

**동거 지적장애인 학대·착취한**  
**20대 커플, 징역 15년씩**

**보이지 않는 현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

- 출처: 중앙일보(2024-11-02) '아동학대 86%가 부모, 또 다른 정인이' 지금도 울고 있다.', 뉴시스(2021-01-29) '동거 지적장애인 학대, 착취한 20대 커플, 징역 15년씩', KBS뉴스(2025-07-01) '요양원서 맞고 숨져도, 노인학대 처벌은 1% 왜?(취재 후).'

02

# 사회가 바라본 장애,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장애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장애, 비장애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분과 배제가 아니라

**존중과 이해**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



다양성 존중  
= 인권 존중

모든 사람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

# 장애의 개념



## 개념의 불명확성과 가변성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인권 의식  
향상

사회적  
인식 변화

장애 개념의 변화 및 확장

# 장애 개념의 변화



신체 손상  
개인의 문제

개인과 여러 사회환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

# 국가별 장애 인정 기준 차이

## 대한민국

장애인 등록제

## 해외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사회 참여 및 활동 제약



미국

비만인



스웨덴

자국어를 못하는  
외국 이민자

#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기능 손상 중심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 정의

# 장애인등록제



국가의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결정하기 위함

## 장애유형(15개)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 내부 기관의 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 장애인등록제

📄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인

장애유형(15개)

<2021년 장애인정기준 완화>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복시
- 백반증
- 뚜렛장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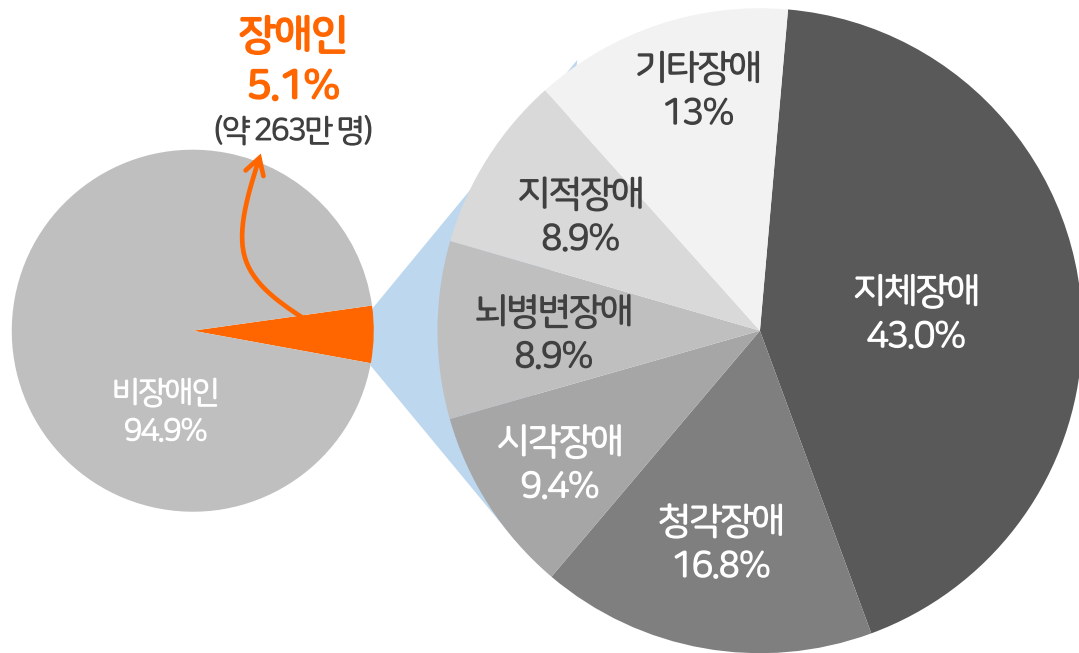


취장장애(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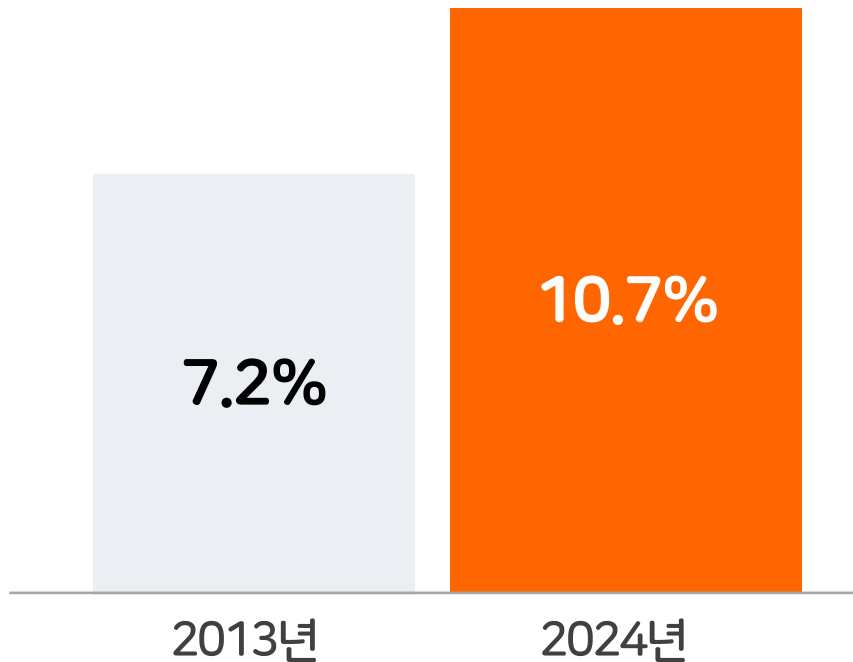
총 16개  
장애유형으로 확대

#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

(2024년 기준)



장애유형별 인구현황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증가 추세

\* 출처: 보건복지부, 2025,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 장애의 발생 원인

## 과거

- 선천적 원인
- 의료 기술의 한계 등

## 현재

- 산업재해
- 사고
- 고령화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증가**

전체 장애인구  
**지속적 증가**

# 장애로 인한 어려움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양

사회적 지원의 부재로  
발생하는 장벽

차별

배제

학대

# 장애로 인한 어려움(예시)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인지기능, 의사소통, 상호작용 차이  
**대인관계, 사회생활 어려움**

## 정신장애인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

## 청각장애인

청신경 손상 또는 평형기능 이상  
**의사소통 및 보행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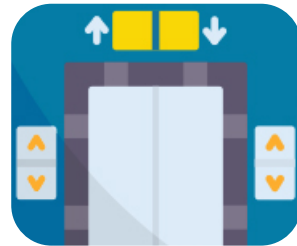
##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뇌졸중, 뇌 손상(외상)  
**걷기, 움직임, 일상생활 동작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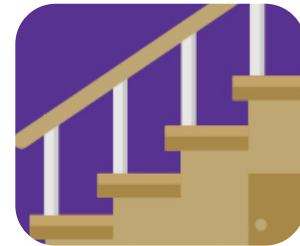
# 중요한 점은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장벽은 개인마다 다름



지체장애(예)



이동의 제약 **감소**



이동의 제약 **증가**

# 실제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결핍**과  
**취약함**으로 바라봄

장애인 = **보호**와 **시혜**의 대상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음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상실

취약이라는 시선



차별과 배제



학대

# 장애 ≠ 결핍

장애는 다양성의 한 모습  
누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일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관점과 시선의 변화

학대의  
대상



존중 받는  
동등한  
구성원

03

# 여전히 지속되는 장애인학대 실태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발생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2024년 한해

## 약 6천 건

피해장애인의 약 9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약 65%

단순한 수치가 아닌,  
개인의 고통과  
무너지는 일상 반영

# 장애인학대 이해

## 장애인학대 개념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장애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 장애인학대의 특성

### 행위자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인, 고용주 등  
피해자의 주변인이 대다수 차지

### 피해자

**발달장애인\* 약 65% 이상**

\*발달장애인에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 포함됨

📍 발생장소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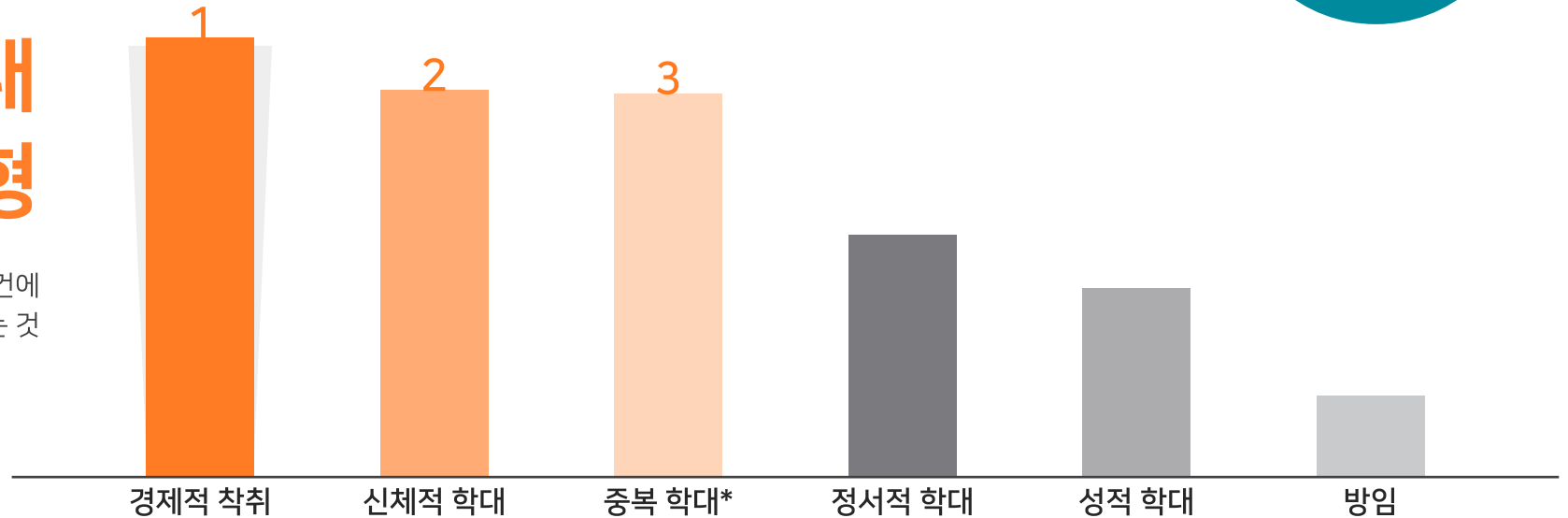
집, 직장 및 일터,  
사회복지시설, 상업시설

**온라인 등  
가상공간 등**



## 장애인학대 유형

\*중복 학대: 하나의 사건에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반 되는 것



장애인학대 유형별 이해

#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체벌, 기합, 낙태, 문신, 불임수술, 보조기기의 훼손 및 임의 작동 등도 포함



# 신체적 학대

##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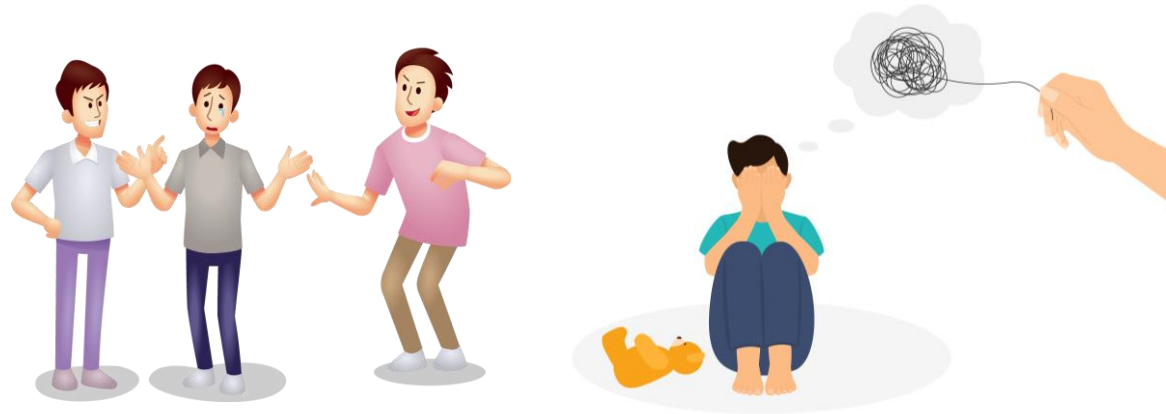
- 이해되지 않는 상처·부상의 반복
- 결박·구속 흔적
-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 발생
- 특정 장소나 사람 회피 등

## 주의할 점

-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가능
- 직접 접촉이 없어도 학대 가능  
(예: 욕설과 함께 손·발·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장애인학대 유형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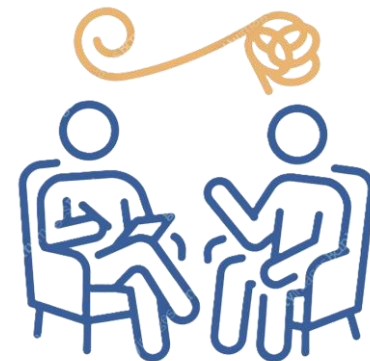
# 정서적 학대

## 징후

- 특정 장소·사람을 회피 또는 거부
- 과도한 긴장과 불안
- 수면장애, 우울, 무기력, 자살 충동 호소 등
-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순응적인 태도
- 자신감 하락, 자기비하적인 태도
-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등

피해장애인이 직접 말하기 전에 발견 어려움

피해장애인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정서적 학대

## 정서적 학대 유형

### 언어적 학대

- 폭언
- 협박
- 모욕 비하 등



### 비언어적 학대

- 무시
- 비웃음
- 따돌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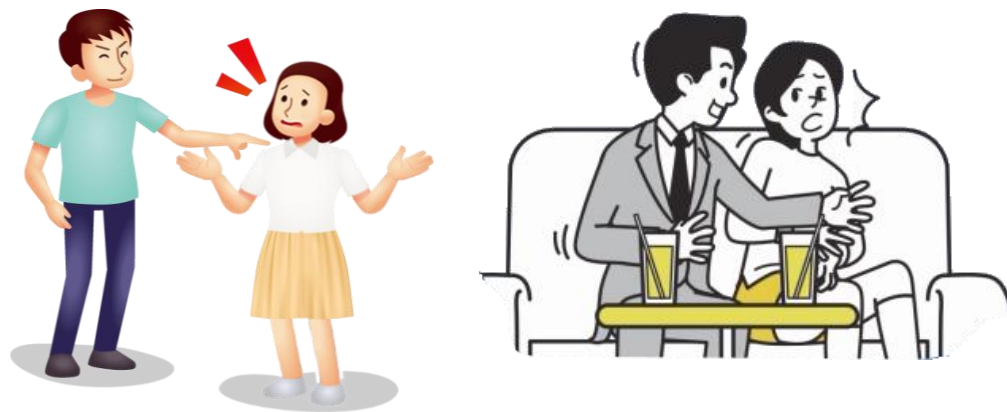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

장애인학대 유형별 이해

#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적 학대

## 주요 행위 유형

- 강간, 강제추행
- 성매매 유인이나 강요
- 성희롱
- 특정인과의 성적 행위 강요
-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강요
- 성적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등

## 징후

- 신체에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  
(타박상, 성병, 생식기 감염)
- 옷이 손상된 경우
- 성적 행동의 갑작스러운 변화
- 반복적인 성적 표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지식이나 행동

# 성적 학대



예 인터넷 방송에서 장애인을  
선정적인 콘텐츠에 출연

장애인  
성적 학대

거부 의사가  
없었다면  
성적 학대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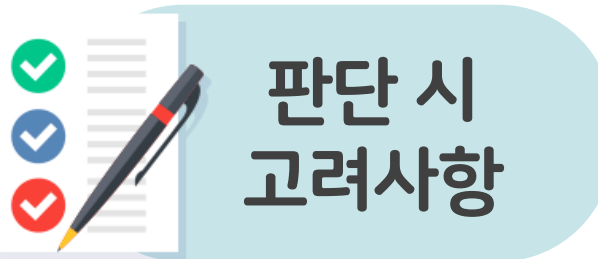


성적 학대임!

## 성적 학대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다면

거부 의사나 고통 표현이 없어도  
성적 학대에 해당



판단 시  
고려사항

- 장애 유형과 장애 수준
- 피해 당시의 상황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장애인학대 유형별 이해

#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와 비교하여 **장애인학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



# 경제적 착취

## 착취 대상

- 현금이나 물건, 부동산
-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과 같은 공적 급여 등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 경제적 착취 예

- 일을 시키고 임금 미지급
- 보증, 명의 도용으로 채무 발생
- 폭행·협박·기망으로  
부당 계약 체결 또는 권리 포기 유도
- 보험 가입 후 보험금 가로채기
- 급여 관리자에 의한  
공적 급여 무단 사용 등

## 경제적 착취

왜

발견이 어려울까?

잘 드러나지 않음

### 의심 신호

- 일을 하지만 정당한 급여 미지급
- 정기적 수입이 있음에도 생계 곤란
- 지불 여력 있음에도 공공요금 미납 등
- 본인 모르게 발생한 대출 내역
- 설명할 수 없는 금융 거래나 계약서 발견 등

장애인학대 유형별 이해

# 유기 및 방임

##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유기 및 방임

## 징후

- 저체중이나 전신 쇠약,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
- 신체와 의복, 주거 공간의 위생 불량
- 부적절한 거주 환경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 갑작스러운 보호 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또는 연락 두절
- 치료, 복지, 교육 서비스 제공 거부 등

# 유기 및 방임

## 보호의무자

- 가족
- 법률에 따른 법정대리인
- 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활동지원사, 동거인, 고용주 등)

**보호 의무자의 유기와 방임만이  
학대 행위로 인정**

한 가지 유형의 학대로 나타나지 않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

두 가지 이상 학대 유형의 동시 발생이 다수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발견 및 신고 지연

장기간 학대 지속



# 장애인학대가 미치는 영향

고통의 정도: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선 수준

신체적·정서적 상처

삶 전반을 무너뜨릴 정도로  
깊고 심각한 고통

존엄의  
붕괴

관계의  
붕괴

삶의  
붕괴

심각한 인권침해

# 법에서도 장애인학대를 범죄로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법에서도 장애인학대를 범죄로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장애인학대 사례

### 신체적 학대 사례

“

어느 날, 영식 씨는 시설 생활 중 컴퓨터와 휴대전화 유료 콘텐츠 사용 문제로 원장에게 불려 나옵니다.

원장은 영식 씨를 훈육하겠다고 의자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발바닥이 보이도록 강제로 앉힌 뒤, 보관 중이던 쇠봉을 꺼내 들어 발바닥을 때리려 시도했습니다. 주위에는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원장은 영식 씨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영식 씨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훈육을 하겠습니다.”

이 말로 마치 정당한 지도 행위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공포심을 이용한 위협 폭력이었습니다.

원장은 이것을 훈육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존엄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으로 행동을 억누르려 한 것입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사례

“

민호 씨는 몸이 불편해 정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한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 호소했지만, “재활하려면 참아야 해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민호 씨의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며, “발음이 이상해”라며 조롱 섞인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호씨는 치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강압과 무시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단순한 불친절이나 오해가 아닙니다.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고, 정서적 상처를 남긴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경제적 착취 사례

“ 옥순 씨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가 말했습니다. “네 돈은 내가 잘 관리해 줄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옥순 씨는 보조금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통장을 넘겨받은 뒤, 매달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대부분을 자신이 사용했습니다. 옥순 씨에게는 생활비라며 소액의 용돈만 건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옥순 씨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도 자유롭게 쓰지 못한 채, 자신의 경제권을 착취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착취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방임 사례

“

민재 군은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었지만, 수업 속에서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민재 군을 교실 뒤편에 앉히고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과제를 내줄 때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으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민재 군은 홀로 식사를 하거나, 때로는 교실에 남겨진 채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교사와 보조 인력은 바쁘다며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민재 군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배움의 권리도, 또래와 함께하는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교실 한구석에 ‘존재감 없는 아이’로 인식되었습니다.

단순한 교육의 미비와 한계가 아닙니다. 장애 학생을 교육 현장에서 방치하고, 학습과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한 명백한 방임입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성적 학대 사례

“

지혜 씨는 평소 낯을 가렸지만, 친절하게 다가오는 동네 지인을 믿고 따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같이 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지혜 씨는 자연스럽게 그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듯했지만, 곧 불편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지혜 씨는 거부하려 했지만, 제대로 저항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괜찮아, 다들 하는 거야.”라며 회유했습니다.

사건 이후 지혜 씨는 큰 불안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지혜 씨는 나름대로 짧은 말로 상황을 표현했으나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이 일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는 때로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민감하게 살피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작은 신호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무관심이 피해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정서적 학대 사례

“

시각장애인 윤식씨는 평소처럼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 시간에 관한 질문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번지자 상황은 곧 달라졌습니다.

운전기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윤식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겁을 주듯 위협하는 말과 태도에, 윤식씨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달리던 차를 도로에 세우더니, 시각장애인인 윤식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한참을 도로 위에 홀로 남겨진 윤식씨. 도움을 청하기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불친절한 서비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을 무시하고, 존엄을 짓밟은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성적 학대 사례

“

지체장애인 미순씨는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파견된 활동지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처음에는 “아픈 곳을 주물러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곧 돌봄을 빌미로 미순씨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농담과 야한 이야기를 이어갔고, 점점 그 강도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휴대폰을 꺼내 외설적인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웃어넘기듯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위치에서, 그는 오히려 미순씨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지원 관계에서 발생한 명백한 성적 학대이며, 신뢰와 의존을 악용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피해자는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경제적 착취사례

“

지적장애인 익환씨는 SNS를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게임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접속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남성은 발달장애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익환씨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돈이 급하다며 통신사 메시지처럼 꾸며낸 거짓말에 피해자들은 속아 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익환씨의 적금을 해지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임으로 시작된 친분은 경계적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신뢰를 악용한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사기가 아닌 발달장애인을 겨냥한 치밀한 범죄입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신체적 학대사례

“  
장애아동인 현서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이 되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습관처럼 입술을 깨무는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사는 “왜 또 그러니, 잠 좀 자라니까.”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현서의 입을 때리고, 엉덩이까지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현서는 놀라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교사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잠 시간은 현서에게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육이나 지도 차원이 아니라,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체적 폭력을 가한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사례

“

은수씨와 노을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원장은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에게 서로의 뺨을 때리며 싸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수씨와 노을씨는 겁에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저하자, 원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은수 씨의 뺨을 직접 때리며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작업장은 안전한 일터가 아니라, 언제 모욕과 폭력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장은 유통기한이 수개월이나 지난 식품을 식사와 간식으로 제공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음식을 먹어야 했고, 건강과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 상황이 아니라, 공개적인 폭력과 모욕을 강요하고, 기본적인 식사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은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성적 학대 사례

“

선우씨는 정기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한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 혼자 옷을 갈아입기 어려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탈의와 치료 준비를 돕겠다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료와는 무관한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선우씨가 불편함을 표현했지만, 직원은 “치료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선우씨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 두렵고 불안해졌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공간에서 오히려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 과정에서의 오해가 아닙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불필요한 노출을 강요한 명백한 성적 학대 행위입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사례

“지훈씨는 한 소규모 사업체에서 단순 포장 업무를 맡아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청소와 정리를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일이 남으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되어도 약속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정도만 받는 거야.”라며 임금을 마음대로 깎아 지급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월급을 늦게 주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지훈씨가 이유를 묻자 사장은 “싫으면 그만둬. 너 대신 일할 사람은 많아.”라며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 정도도 못 하냐”, “왜 이렇게 느리냐”라며 공개적으로 꾸짖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지훈씨는 일터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모욕적인 말과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을 통해 자립하고 싶었던 마음은 점점 위축되었고, 출근길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나 직장 내 갈등이 아닙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제적 착취와, 반복적인 모욕과 위협을 가한 명백한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 장애인학대 사례



### 성적 학대 사례

“

수연씨는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친절할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며 친구가 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대화였지만, 점점 외모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연씨가 거절하자, 그 사람은 “사진 안 보내면 너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겠다”,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난 수연씨는 결국 원치 않는 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노골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 받았습니다. 수연씨는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안전한 소통의 장소가 아니라,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협박과 강요를 통해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명백한 온라인 성적 학대 행위입니다.

04

# 우리 모두, 인권을 지키는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장애인학대

## 가장 중요한 부분

### 예방과 신속한 신고 및 지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능
-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더 엄격한 의무 부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직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요원 포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사
- 응급구조사
- 119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의무자 직군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 대상 교직원 및 강사 등
- 초·중등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의무자 직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의 장과 운전자
- 장애인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근로지원인
-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장과 그 종사자

202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규 직군 포함  
(2026. 05. 12 시행)



## 신고의무자 제도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장관

-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성범죄 신고 절차와 방법 안내 등

### 국가·지자체

- 학대·성범죄 예방
- 상시 신고 접수 체계 마련 등

### 기관(시설)장

- 직원 대상 신고의무 교육 실시
- 교육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등

**신고의무자**의 법정 의무 교육

# 신고의무자 법적 역할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직무상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신고  
미 이행 시

장애인복지법 제90조  
: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  
학대 시

장애인복지법 제88조2  
: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원래 받아야 할 형벌보다  
형량이 절반까지 무겁게 처벌

# 장애인학대 신고방법

누가?

누구든지  
신고 가능

언제?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거나  
의심될 경우  
(미등록 장애인도 해당)

어떻게?

전화, 이메일, 우편,  
팩스, 문자, 카카오톡,  
직접 방문

신고 시  
필요 정보

- 신고자 관련 정보: 신고자 인적사항,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피해자 관련 정보: 학대피해장애인 인적 사항, 현재 상황
- 학대 관련 정보: 학대 발생 경위 등 구체적 학대 내용

다 알지 못해도  
인지범위 내  
정보로도  
신고 가능

# 장애인학대 신고방법

## 카카오톡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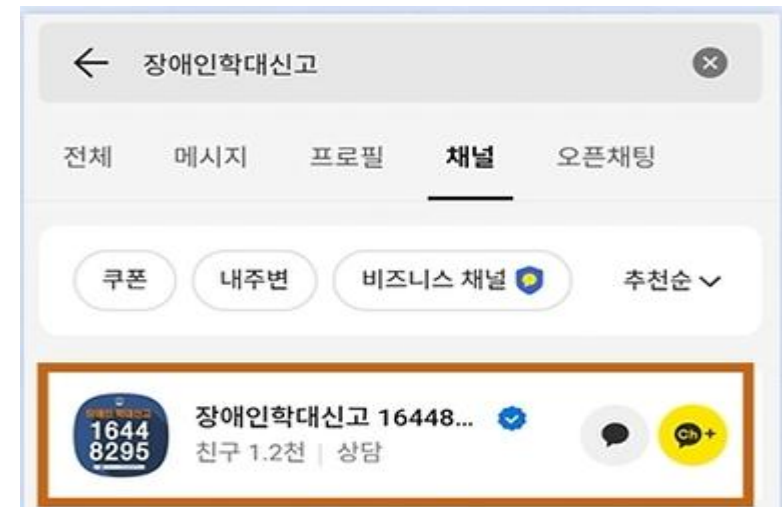
앱 실행



검색창에 장애인학대 입력



1644-8295 채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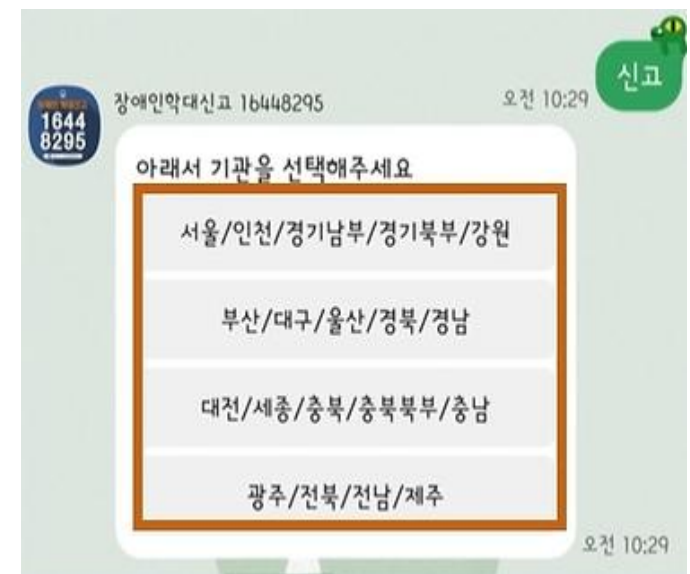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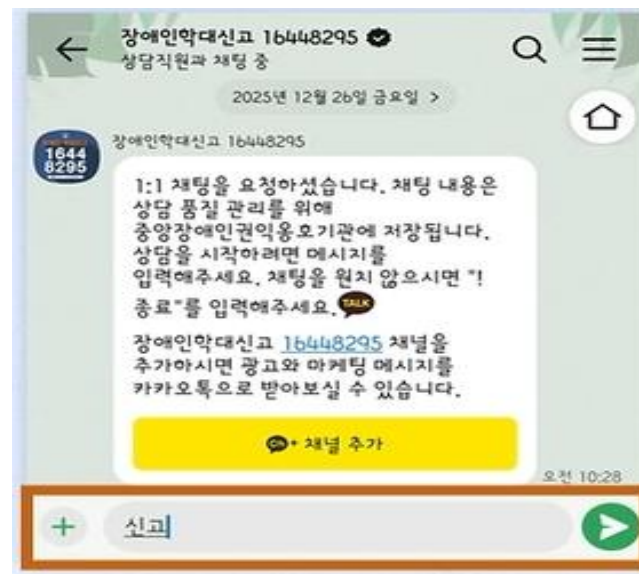
# 장애인학대 신고방법

## 카카오톡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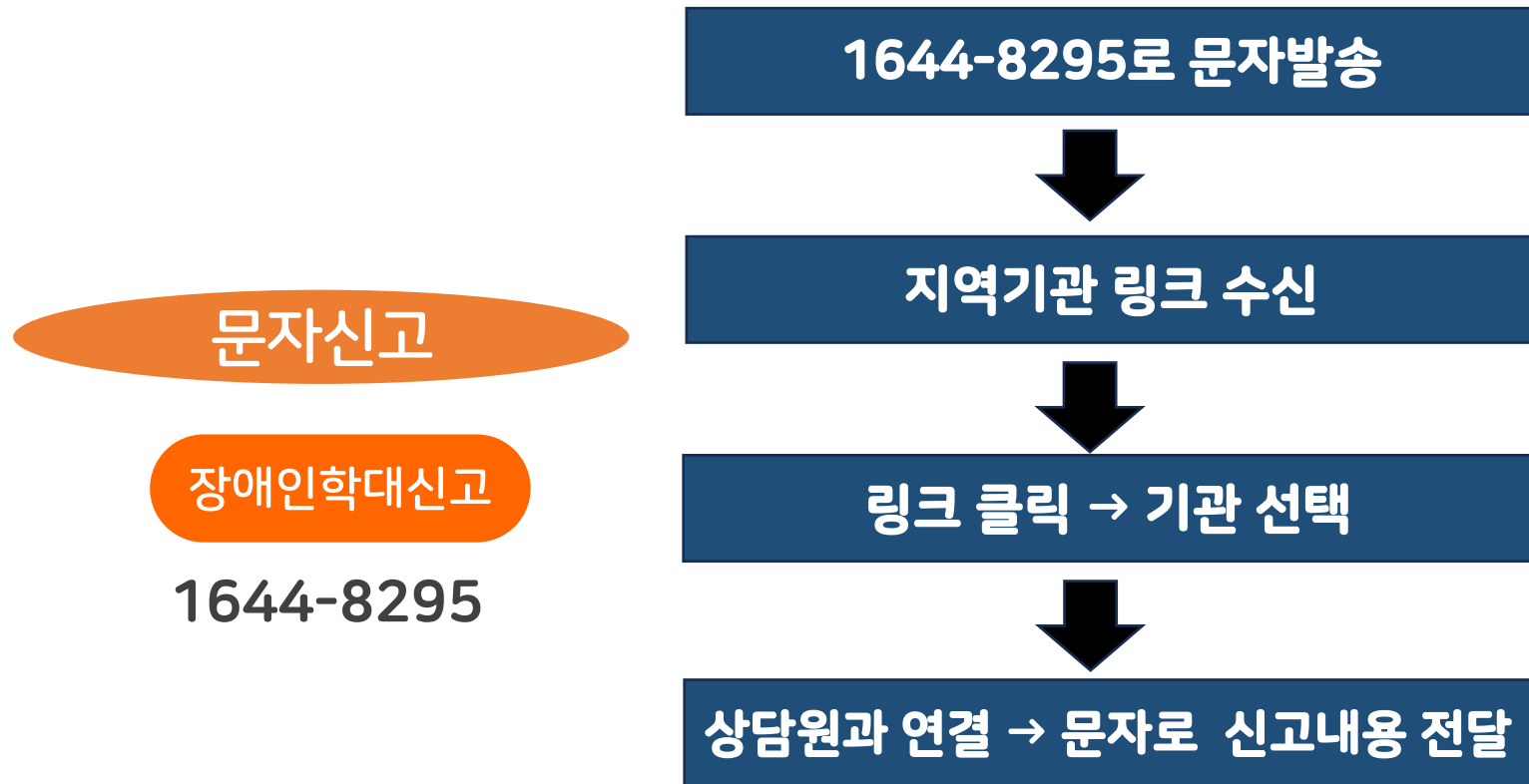
상담원 채팅 선택

검색창에 신고 입력

거주지역 선택→상담원  
연결→신고내용 작성



# 장애인학대 신고방법



장애인학대신고 번호  
(1644-8295)

유선 신고도  
가능

# 신고인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6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하여 신고인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5

- 신고인 불이익 조치 금지
- **불이익조치**: 해고, 부당 인사발령, 임금차별, 근무조건 불이익 등

## 장애인복지법 제86조2

-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의 신분 상실 조치, 신고 방해 또는 신고 취소 강요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고인 보호

신고인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상담 및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가능

## 수사기관

인적사항 기록, 공개 및 보도 금지  
신변 안전 조치 요청 가능  
신고인 정보 철저히 열람 금지

☞ 만약 신고인의 신분, 누설, 공개, 보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보상금, 구조금 등 지급 신청 등 가능  
장애인학대 신고인에게도 동일하게 보호(안전하게 공익신고 가능)

# 신고의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신고 체계를 구축 및 운영

# 기관현황(2025년 기준)

## 중앙기관(1개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기관(시도 단위 19개소)

경기도: 2개소

충청북도: 2개소

## 주요 역할

학대 신고  
접수



상담 및  
사후관리



인권 증진 및  
제도 개선 사업  
수행



현장 조사  
(필요시  
피해장애인 보호)



피해장애인  
보호와  
회복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번없이  
1644-8295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결

누구나 쉽게 신고 가능 및 필요한 도움 이용

장애인 학대 여부를 잘 몰라 신고가 주저될 때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 요청 가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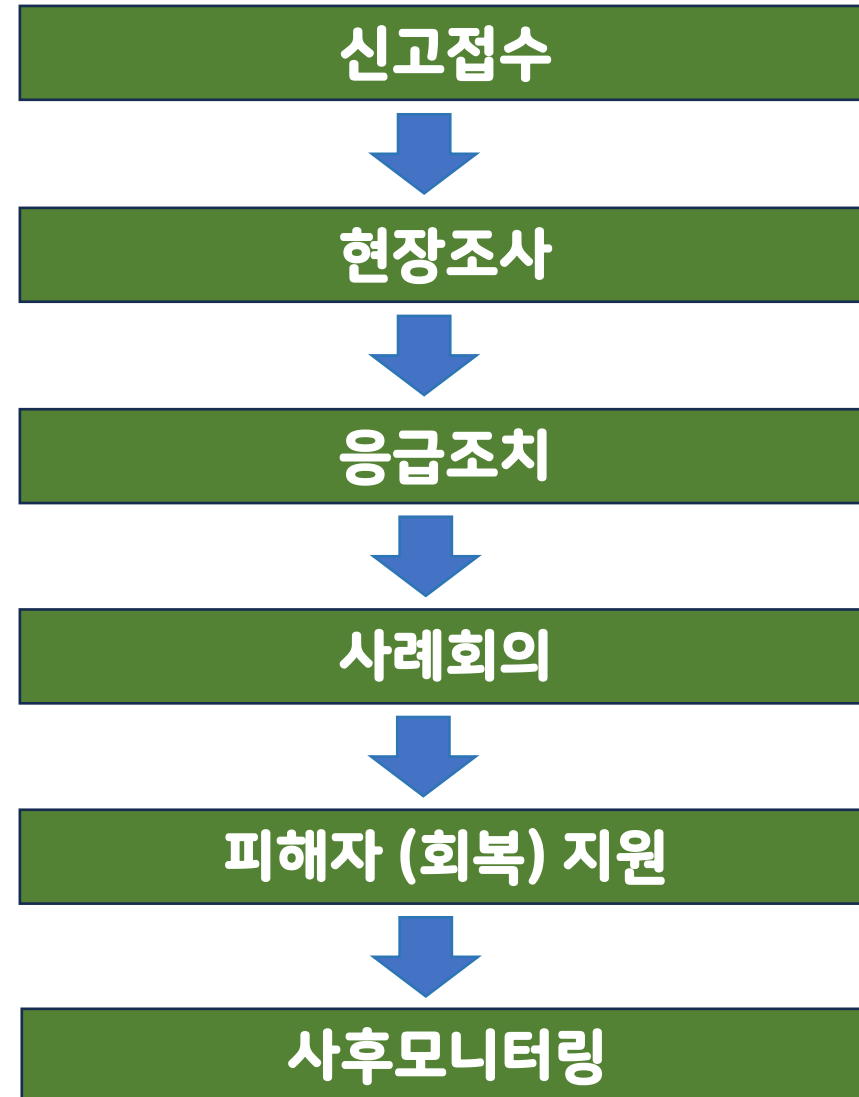
# 장애인학대 신고, 그 의미와 힘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신고 후 지원

- 현장조사 시 방해 및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 현장조사 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
- 필요시 장애인학대사례판정 위원회에서 학대 여부 최종 결정



# 피해장애인 지원

의료지원



학대로 인한 외상이나  
질환에 대한 의료적 진  
단과 치료

심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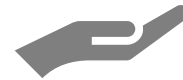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문가 상담

거주지원



임대주택 신청, 쉼터 연  
계, 자립지원 등을 위한  
거주 지원

사법지원



학대행위자 고발, 수사  
절차와 소송, 법률 구조  
기관과 조력인 연계 등  
을 돕는 사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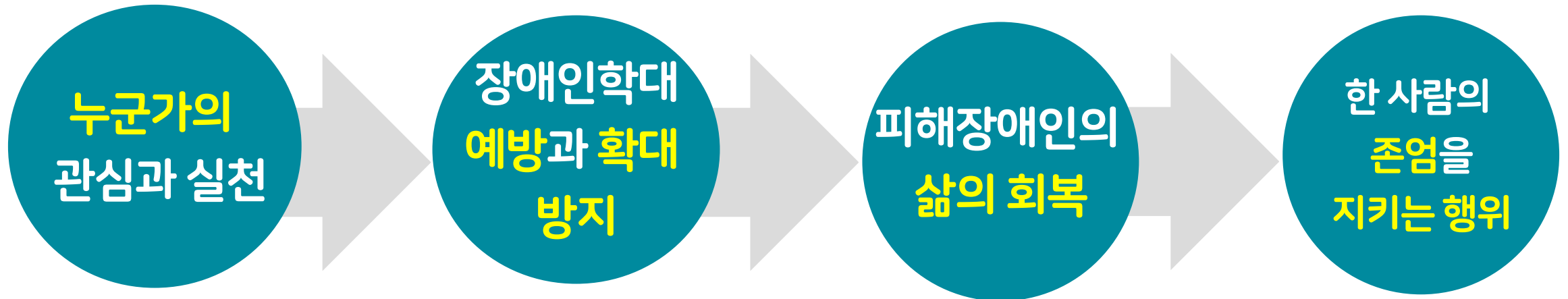
복지지원



장애인 등록 지원, 긴급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생활  
전반 지원

**종합적인** 회복 지원 제공

# 신고의 힘, 의미 있는 변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는 사람을 위한 가치 있는 일

신고 이후 장애인의 삶 변화

## [신체적 학대 신고 이후]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 수빈 씨

“

22세 지적장애인 수빈 씨는 수년간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하며, 두려움과 상처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공무원이 수빈 씨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팔에는 오래도록 누적된 멍이 남아 있고, 누군가의 가벼운 손길에도 쉽게 놀라며 움츠러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고, 그 한 번의 신고로 수빈 씨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신고 직후, 수빈 씨는 가족과 분리되어 쉼터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분리와 오랜 학대의 기억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마음의 문을 열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수빈 씨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 지원을 연결했습니다.

또한 취업을 도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속에서 스스로 설 준비를 함께 해 나갔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수빈 씨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두웠던 표정은 밝아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의 삶은 감옥 같았지만, 지금의 나는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수빈 씨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으로

변한 수빈씨의 삶

## [경제적 착취, 신체 및 정서적 학대 신고 이후] 다시 일할 용기를 얻은 경준 씨

“

35세 저시력 시각장애인 경준 씨는 지역의 작은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 그는 늘 농담이라는 이름의 조롱과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경준 씨가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물건을 일부러 엉뚱한 자리에 두고 “그것도 못 찾냐”며 비웃거나, 의자를 치워 넘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계 담당자는 경준 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급여 일부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참고 버티는 듯 보였지만, 경준 씨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고될까 두려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준씨의 취업 후 지원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습니다. 예전보다 어두워진 표정, 불안한 태도, 설명되지 않는 멍과 상처들.

사회복지사는 주저하지 않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고, 곧바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경준 씨는 직장에서 지속적인 신체 및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당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고, 법률지원을 통해 착취당한 급여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과 함께 더 안전한 직업재활 기관과 연결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난 경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매일이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일할 용기를 찾았어요.

이제는 제가 존중받는다는 걸 느낍니다.”

경준 씨의 변화는 신고의무자의 세심한 관심과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땅히 존중받으며 살아야 할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되찾은 경준씨의 존중받는 삶**

## [경제적 착취 신고 이후] 안정적인 삶을 되찾은 미래 씨

“

25세 지체장애인 미래 씨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미래 씨의 마음 한쪽에는 말 못할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SNS에서 알게 된 친구가 다급히 돈을 빌려달라 부탁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친구의 요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달라거나, 대출을 함께 진행하자는 위험한 부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활동지원사였습니다.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중 미래 씨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활동지원사는 곧바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빌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대출까지 시도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행히 신속한 개입으로 대출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었고, 휴대전화 개통 현황도 파악한 뒤 경찰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빠른 신고 덕분에, 눈에 보이는 피해뿐 아니라 숨어 있던 추가 피해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안정을 되찾은 미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더 늦게 알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은 안심이 돼요.

속앓이만 하고 있었는데, 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의 신고가 학대를 예방하거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고**

**학대 예방과 확산 방지**

여러분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애인학대 신고번호**는 무엇입니까?

1644-8295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1644-8295

